

## 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탐색\*

김 덕 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저작권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되어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법령이 수업 및 수업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학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이외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학교 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교육용 콘텐츠, 교과용 도서, 교과서, 교육 저작권

## I. 서론

과학 및 정보 기술 등으로 교육 외적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는 교과용도서의 소비자와 생산자 즉, 학생·교사와 집필자·출판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또한 보다 의미있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 교과용도

\* 이 논문은 연구자가 참여한 조용기 외(2019) 「미래 사회 대비 교과용도서 편찬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특성 및 활용 체제 연구(RRT 2019-1)」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7875295@hanmail.net)

▣ 접수일(2020.08.31), 심사일(2020.09.14.), 게재확정일(2020.10.06)

서가 놓인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여야 한다. 즉, 교과용도서가 교과 지식의 표준으로만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교과용도서로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의 개념을 현재 서책 기반의 물리적 형태로부터 네트워크상에서 보다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본 단위, 즉 콘텐츠 단위로 재개념화하는 방안을 상정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에서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교육용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둘러싼 네트워크가 훨씬 조밀해질 경우, 이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상태로 교과용도서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되고 이를 엮은 '책'이라는 지식 전달 및 확산 매체가 보편화되었던 것에 비견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의 개념이 재설정될 경우 교과용도서 편찬 개념 또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도서에 준하는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또한 교과용도서 편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교육용 콘텐츠의 법적 지위는 현재의 교과용도서와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적으로 적합한 교육용 콘텐츠에 현재의 교과용도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과 해당 콘텐츠들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환경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주체들이 콘텐츠의 개발·유통·검증·이용·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즉, 교육용 콘텐츠 활용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교육 관련 법령과 함께 저작권·전송권 등 관련 분야 법령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다룬 연구는 법학, 행정학, 출판학, 컴퓨터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고찰하거나(구재균, 2007; 신상민, 2014),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전제로서 저작권과 관련된 입법론적 제안을 제시하기도 하며(최진원, 2010; 최진원, 2012), 해외 7개 국가의 교과용도서와 관계된 저작권법과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최진원 외, 2018). 또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관리 및 활용 지침을 도출하거나(김창화·김원오·이가영, 2018), 종이책과 비종이책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기태, 2013), 디지털 교육 정보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관련 현안을 분석한 연구(김홍래, 2011)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법률적 문제의 핵심에는 저작권법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소위 아날로그 시대 콘텐츠에 적용되던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진원(2010)에서와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교육용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교육자의 효과적인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신상민, 2014, p. 30) 사이의 균형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최진원, 2010; 2012). 정영식 외(2016a)의 경우는 최진원(2010)의 문제의식을 긍정하면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김창화·김원오·이가영(2018)에서는 교과용도서 콘텐츠 이용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권리 지침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작권의 실질적 보호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동시에 교과서에 사용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용 콘텐츠가 활발히 개발·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용 콘텐츠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여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우선 고찰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현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에는 과거와 현재의 누군가가 창작한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이 필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변용완 외, 2015, p. 24).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 내용을 구현한 교과용도서에 수록된 교육용 콘텐츠를 비롯하여 학습 동기 유발 및 학습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동영상과 음원, 게임, 그래픽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이 창작한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해당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저작권 관련 법령에 의해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행히도 현행 「저작권법」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제25조에서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한 규정을 제시해 두었다. 즉, 사용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최진원 외,

2018, p. 11.). 타인의 콘텐츠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정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교육, 즉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사용으로 인해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올바른 콘텐츠 이용을 위해 2013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마련하여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이용 요건을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해 놓았다.

<표 1> 교육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요건

구분	이용 요건
이용 대상 저작물	○ 공연,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 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 방법	○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전시에 의한 이용
이용 시간	○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 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 ○ 수업 전후, 연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 장소	○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 판단 기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허용되지 않는 이용(이용 허락 대상 요건)	○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표시	○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기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음.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에 따르면 이용 주체가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한정되며, 이용 시간도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어 담당 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에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전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매학기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 도서나 간행물 등을 전체 복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허용 부수도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배포할 수업 자료로서 타인의 콘텐츠를 복제하여 1부씩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수업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수업에 활용하게 할 수 없으며, 한번 만든 자료라고 해서 이를 다음 학기 수업에 계속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수업 연구나 교과 연구와 같이 학교의 수업 방법과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연구 활동도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한하에서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지원기관으로 한정하다 보니, 초·중등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이를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은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할 때 타인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 물론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할 때마다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소위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이용 목적을 ‘수업’이나 ‘수업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공무원 신분인 아닌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현행 법령과 제도하에서는 타인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거나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유통하는 행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실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실 수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일례로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주도하여 학교와 교육지원기관에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전국교육정보 공유체계’ 서비스의 누적 건수가 콘텐츠 공유에 따른 저작권 부담의 과중으로 인해 2007년 160만 건에서 2012년 3만 건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변용완 외, 2015, p. 25).

이러한 점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보다 자유로운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

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이른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⑥항을 보면 “학교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육을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 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헌재결정례 89헌마88, 1992. 11. 12.).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가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활용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콘텐츠와 대별되는바, 교육용 콘텐츠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표 2> 각국의 교육 관련 저작권 법 제도 현황

항목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용주 해당 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초·중·고등 교육기관	초·중·고등 교육기관	초·중·고등 교육기관, 직업교육기 관, 각종 전문교육 기관	초·중·고등 교육기관, 비정규교육 기관	초·중·고등 교육기관, 직업교육기 관, 각종 전문교육 기관	초·중·고등 교육기관, 전수학교, 직업교육시 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전수학교
허락 없이 사용	복제, 전송	전시, 공연 복제(전송 포함)	복제, 공중전달	복제, 공중송신	복제, 공중전달	복제, 공중전달	복제, 공중송신	복제, 공중송신
교육 이용 목적	수업	교육	교육	교육	수업, 학술연구	교육	교육 지도	수업
교육 기관 이용 범위 (분량)	일부분	저작물의 10% 이내	12개월간 저작물의 5% 이내	저작물의 10% 이내	소량	발췌 수준 (이용허락 계약시 저작물의 10-15%)	저작물의 10% 이내	필요한 범위 내
사용료	무료 (대학교는 보상금)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단체 계약	무료	무료
전송(공중 전달) 시 의무사항	기술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학생 및 교직원만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교육 지원 해당 기관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국립특수 교육원, 국사편찬 위원회	정부기관, 교육위원회 에서 인증받은 비영리 기관	정부기관,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평가원, 교원양성 개발 교육정보원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교육지원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 교육 지원 시설 (비영리성만 인정되면 포함)	공공기관 (행정관청이 정한 교육 관련 기관)	교육 용품 공급 시설 등의 비정규교육 기관, 비영리 교육지원 시설	교육지원 기관 (교원 연수원)

항목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제한 범위	복제, 전송	전시, 공연 복제(전송 포함)	복제, 공중전달	복제, 공중송신	복제, 공중전달	복제, 공중전달	복제, 공중송신	복제, 공중송신
이용 목적	수업지원	교육	교육지원	교육, 교육지원	수업, 학술연구	교육	교육, 교육지원	수업
이용 범위 (분량)	일부분	저작물의 10% 이내	12개월간 저작물의 5% 이내	저작물의 10% 이내	소량	발췌 수준	저작물의 10% 이내	필요한 범위 내
사용료	보상금	무료	무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이용 범위 15% 내외 까지 확대됨) 학생 및 교원만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무료	무료 (전송시 보상금)	- (과약 안 됨)	무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이용 범위 12% 내외 까지 확대됨)	무료
전송(공중 전달) 시 의무사항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출처: 변용완 외(2015, pp. 147-151.)

### III.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탐색

#### 1.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향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과 활용을 위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을 다음 세 가지로 상정하였다. 첫째, 법령과 제도가 교육용 콘텐츠 개발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교육용 콘텐츠의 유통 및 활용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 및 유통되는 단계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교육용 콘텐츠 개발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타인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법령 및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의 구성원만이 수업 및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자유롭게 교육

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활발한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법령과 제도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용 콘텐츠의 유통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콘텐츠의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 및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과 제도에 따르면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에 타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시·배포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다. 동일 교과목의 동료 교사에게 자신이 만든 교육용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 폭넓은 범위의 교육용 콘텐츠 유통 및 활용 체계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 역시 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령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콘텐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타인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전송·배포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되, 그것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용 콘텐츠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거나, 개발 및 활용의 범위를 일반 사교육 시장까지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환경 조성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제시되어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용 콘텐츠가 자유롭게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형태, 이용 범위 등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sup>1)</sup>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용 주체에 실질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만약 콘텐츠의 이용 주체가 이와 같이 확대될 경우 현재보다 교육용 콘텐츠의 활발한 개발 및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25조 ①항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여 저작권의 배타적 권한을 약화시키는 ‘저작권의 제한’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제2조를 보면 교과용도서를 ‘교과서 및 지도서’라고 하면서 그 범주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제시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용 콘텐츠도 해당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의 범주에 속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게재는 할 수 있지만 배포·전송은 할 수 없다. 즉 콘텐츠 개발에 제약은 없지만 이를 자유롭게 유통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2.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위한 델파이 조사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국내의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연구자가 마련한 방안의 타당도를 1~5점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는 ‘척도형+서술형’ 문항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방형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인적 구성(단위: 명)

근무처	초·중·고	대학	교육부·교육청			출판사	유관 공공기관
	8	13	3			3	3
담당 교과 또는 업무	법학 전공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서 및 콘텐츠 연구개발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공학	교과교육(교사/교수)	교과서출판	디지털 교과서 및 콘텐츠 연구개발
		3	2	3	11	3	3
		8			6		
교육 및 연구(업무) 경력	1~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2	16	9	3			



척도형 문항으로 제시된 5개의 문항이 모두 평균 4.0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내적타당도(CVR : Content Validity Ratio)도 임계값인 .33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법」에서 ‘수업’과 ‘수업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학교교육이나 학교교육 지원 등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평균 4.41의 높은 반응이 나타났으며(1-1 문항),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공무원 신분)’에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교육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평균 4.24의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1-2 문항). 또한 전시·배포의 인정 범위를 교육을 목적으로 둔 경우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4.31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1-3 문항). 그리고 「저작권법」 제25조 ①항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평균 4.34의 높은 반응이 나타났으며(1-4 문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교육용 콘텐츠 사용료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평균 4.45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1-5 문항).

이밖에도 향후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를 대비하고 디지털교과서나 온라인상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염두에 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효력의 부여를 위해서는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활용에 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 조약부터 심도 있는 연구를 병행하여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현행 「저작권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현재보다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유통·활용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1-5 문항’은 제외하고, ‘1-1 문항’부터 ‘1-4 문항’까지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문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문항을 구안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및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수업 연구 및 교과 연구 등을 포함한 장학 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60이라는 매우 높은 응답자 평균이 나타났다(1-1-1 문항). 반면 환경 미화, 운동회, 전시회, 교내방송 등의 교육 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3.87로 나타났으며, 내적타당도(CVR)도 임계값인 .33에 겨우 도달하였다(1-1-2 문항). 또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교육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4.40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1-2-1 문항),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57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내적타당도도 .20으로 임계값인 .33에 미치지 못했다(1-2-2 문항).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권리 제한 범위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3.73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문항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2-3 문항).

교육용 콘텐츠의 전시 및 배포의 인정 범위를 교사, 학생, 공공기관 등이 개발·제작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 단계에서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평균 4.53의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1-3 문항).

<표 5>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문항 및 응답 분석 결과(2차 델파이)

문항	분석							
1-1. 현행 「저작권법」의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을 넘어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1-1-1.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수업 연구 및 교과 연구 등의 장학연구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	4.60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CVR
	표준편차	1	1	0	5	23	30(명)	
	0.93	3.3	3.3	0.0	16.7	76.7	100.0(%)	.87
1-1-2.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환경미화, 운동회, 전시회, 교내방송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해야 한다.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3.87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CVR
	표준편차	2	3	5	7	13	30(명)	
	1.28	6.7	10.0	16.7	23.3	43.3	100.0(%)	.33
1-2. 현행 「저작권법」에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공무원 신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1-2-1.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교육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4.40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CVR
	표준편차	2	1	2	3	22	30(명)	
	1.19	6.7	3.3	6.7	10.0	73.3	100.0(%)	.67
1-2-2.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비영리 교육기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3.57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CVR
	표준편차	4	3	5	8	10	30(명)	
	1.41	13.3	10.0	16.7	26.7	33.3	100.0(%)	.20
1-2-3.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권리 제한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3.73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CVR
	표준편차	3	5	1	9	12	30(명)	
	1.41	10.0	16.7	3.3	30.0	40.0	100.0(%)	.40

문항	분석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1-3.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전 시·배포의 인정 범위를 확대·적용하고자 할 때, 그 범위를 교사, 학생, 공공기관 등이 개발·제작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4.53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CVR
	표준편차	1	1	0	7	21	30(명)	
	0.94	3.3	3.3	0.0	23.3	70.0	100.0(%)	.87
1-4.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자 할 때,								
1-4-1. 제2조 1항에 교과서 혹은 지도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CVR
	표준편차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1.40	10.0	13.3	6.7	26.7	43.3	100.0(%)	.40
1-4-2. 제2조 2항이나 3항에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CVR
	표준편차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1.23	6.7	6.7	6.7	23.3	56.7	100.0(%)	.60
1-4-3. 미래 사회의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교육용 콘텐츠 관련 제반 사안을 다룬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CVR
	표준편차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0.77	0.0	3.3	6.7	16.7	73.3	100.0(%)	.80
1-5. 이외에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개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2조 1호에 교과서 혹은 지도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평균 3.80의 반응을 보였으며(1-4-1 문항), 제2조 2호이나 3호에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평균 4.17의 보다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1-4-2 문항). 중·장기적으로 교육용 콘텐츠 관련 제반 사안을 다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응답자 평균이 4.60으로 나타났다(1-4-3 문항).

이를 통해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유통·활용을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교육 관련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반영한다면 제2조 1호 보다 제2조 2호이나 3호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본 연구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의 ‘교과용도서’가 갖는 개념적 함의에 국한하여 교육용 콘텐츠의 위상을 ‘교과서’나 ‘지도서’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바라본 결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정비 방안을 마련할 때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개의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및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문항 및 응답 분석 결과(3차 델파이)

문항	분석							CVR
	평균	응답자 수(명) / 비율(%)						
1-1. 「저작권법」의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 전반으로 확대하되, '수업 및 수업 지원 활동'과 '기타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활동'의 권리 제한 범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예: '수업 및 수업 지원 활동'은 사전 이용 허락 및 보상금 지급 불필요, '기타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활동'은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현행 교과용도서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	3.53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20
	표준 편차	5	6	1	4	14	30(명)	
	1.63	16.7	20.0	3.3	13.3	46.7	100.0(%)	
1-2. 이외에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개진 부탁드립니다.								

3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저작권법」의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 전반으로 확대하되, '수업 및 수업 지원 활동'과 '기타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활동'의 권리 제한 범위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 3.53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내적타당도도 .20으로 임계값인 .33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30명의 전문가 중 18명이 4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1점과 2점을 부여한 전문가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이유로 '수업 및 수업 지원 활동'과 '기타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교육용 콘텐츠 사용료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균 4.45의 높은 반응을 보였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IV.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된 부분으로 인해 혹여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제시될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 기준 및 활용 체제가 원활히 구현되는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법」 관련 개선 방안

현행 「저작권법」에서 교육용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25조 ①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의 교육 목적상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경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②항과 ③항에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범위와 이에 따른 이용 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④항에는 교과용도서 및 수업 또는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된 공표된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이라고 명명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 가.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 개선

「저작권법」 제25조의 각 조항을 보면 조항마다 정해 놓은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다. 먼저 제25조 ①항에는 ‘학교의 교육 목적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②항과 ③항에는 학교교육 중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배타적 권리 제한이 인정되지만, 여타 교육용 콘텐츠의 경우는 수업 또는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그 제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이외의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 및 활용하는 데 제한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②항과 ③항의 한정된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학교교육 일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절의 1,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작권법」 제

25조 ②항과 ③항의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외부 전문가들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학교교육이 넓게는 수업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의 연수 자료를 제작하거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다양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매우 절실함.
- 교과 수업 외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 학급 및 학생 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음.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한 범위 확대 필요
- 학교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봄.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나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수업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일 수 있는 학교교육이나 지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봄.
- 권리제한의 범위를 수업과 수업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협의의 의미로 교육을 해석하는 것.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은 수업 장면 이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1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인용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무분별한 수준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제한 권리를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수준으로 확대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까지인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수업(학교 및 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수업 연구 및 교과 연구 등과 같은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학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미화, 운동회, 전시회, 교내방송 등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장학 활동은 배타적 권리 제한이 필요치 않지만,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한 장학 활동은 수업의 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 교육 활동의 경우는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업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진 교육 활동인 만큼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규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교과 외 학교 활동 또한 인성 함양 및 교육 효과 확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 활동만큼 수업이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로 오해되어 자칫 「저작권법」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반 교육 활동에 대한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우려는 당연한 부분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②항의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로 인해 저작권자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무작정 침해하는 행위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④항에도 이러한 이유로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②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표 7> 학교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범위 설정 관련 전문가 의견(예시)

구분	긍정	부정
장학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연구 및 교과 연구 등도 학교교육 또는 그 지원의 취지와 목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li> <li>-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 수업 연구 및 교과 연구 등 장학 연구 활동이 필요.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장학연구 활동도 포함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나 교사의 순수 연구목적의 활동에는 배타적 권리제한이 필요하지 않음.</li> <li>- 수업연구 및 교과 연구 등의 장학연구 활동 포함할 경우 공간적 시간적 제한에 어려움 존재.</li> <li>- 활용 필요성에 대한 감정과 법적 타당성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함.</li> </ul>
일반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가능한 범주에 있음.</li> <li>- 환경미화, 운동회, 전시회, 교내방송 등도 정규수업은 아니지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업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됨. 사실 상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 버림.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음.</li> <li>- 상대적으로 수업/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될 경우 ‘공간’으로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li> <li>- 지나치게 제한하면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li> </ul>

(2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수업 및 수업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장학 활동’과 기타 학교교육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일반 교육 활동’의 권리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학 활동은 사전 이용 허락 및 보상금 지급에서 면제해 주고, 일반 교육 활동은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소정의 보상금(현행 교과용도서 수준)은 지급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장학 활동’의 경우 ‘수

업 및 수업 지원 활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배타적 권리 제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용 후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적지 않다.

- 수업 및 수업지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특정 가능하므로 저작권법상의 예외 조치(예컨대 사용료 지불 불필요)가 필요하다고 보나,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지원 활동은 적용 범위가 넓게 확대되므로 예외 조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함. 즉, 후자의 경우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봄.
- 수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제한 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
- 학교교육 지원 활동의 범주가 모호하여 저작권의 권리가 남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3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수업 및 수업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학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령을 개선하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보다는 교육용 콘텐츠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 방향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도 같은 맥락에서 수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 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와 같이 장학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정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다.

#### 나.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 개선

현행 「저작권법」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25조 ②항에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학교교육에 보다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학교교육에 활용되는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유통하면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또 다른 주체인 공공기관과 비영리 교육 관련 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미래 사회 대비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 및 교육기관에서 생산되는 내용 콘텐츠를 교원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지원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육기관 또는 교육 지원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 및 교육개발원, 교육학술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으로 까지 저작권제한 적용 대상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됨.
- (1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그러나 델파이 조사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즉 교육 관련 공공기관은 당연히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하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에 더해 「저작권법」 제25조 ②항의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수정한다면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이외에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즉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같이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표 8>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관한 전문가 의견(예시)

구분	긍정	부정
교육 관련 공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음.</li> <li>-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법 규정의 효용이 현격히 떨어짐.</li> <li>-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서비스 형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li> <li>-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므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에 교육 관련 공공기관 포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li> <li>- 저작권 제한의 확대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작자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li> </ul>
비영리 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의 성격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 지급은 필요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칫 공정이용을 해치는 효과(시장수요 잠식 등)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li> <li>-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남용 가능성이 있음.</li> <li>-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생각됨.</li> </ul>

(2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요컨대,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제시된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서 장학 활동과 일반 교육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도 교육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관련 개선 방안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활용하기 위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래 사회에는 ‘교과용도서’라는 물리적 단위보다는 교육용 자료로서의 기본 단위인 ‘교육용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학교교육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교과용도서’를 대신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항을 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검·인정도서로 발행된 교과용도서 이외에 별도의 교재를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물론 수업에서 보조 교재나 참고 자료로 별도의 교재나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활발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용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도서’ 수준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할 경우, 보다 저작권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개발·유통·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 제25조 ①항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교과용도서가 무엇인지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작권법」의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정한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가 포함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①항에서 정해 놓은 저작권 제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우선시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개정과는 별개로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미래 사회 학교교육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사회 대비를 목적으로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앞으로 자유발행 등 교과서의 발행, 개발, 활용 등이 보다 자유롭고 다양해짐을 고려할 때, 교과용도서 규정에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함. 교육 현장에서도 저작권 관련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도서의 개념을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이들 사항을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그런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에는 제2조 1호에서 교과서나 지도서와 같은 수준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제2조 2호나 3호에서 교과서와 지도서의 하위 범주,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과 같은 수준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앞서 델파이 조사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 전문가들은 교과서나 지도서와 같은 수준보다는 교과서와 지도서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제2조 1호보다 제2조 2호나 3호에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이 수록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가 ‘교과용도서를 구성하는 데 사용 가능한 다양한 스케일의 교육 내용 단위’를 의미하는바, 여기에는 이미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를 제2조 2호나 3호에서 교과서와 지도서의 하위 범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다. 또한 현재 디지털교과서가 별도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교과서와 지도서의 하위 범주인 전자저작물로 치부되어 전송과 배포를 위해 부득이 서책 교과서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유지해야 함을 감안할 때, 교육용 콘텐츠도 교과서와 지도서의 하위 범주로 정의된다면 서책 교과서와 반드시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유통·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에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제2조 2호나 3호에 제시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개념 정의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용 콘텐츠의 정의를 다룬 별도의 각호 신설도 필요해 보인다. 만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이 이와 같이 방향으로 적시된다면, 그것이 법적 용어로 작용하여 향후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 마련에 용이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lt;표 9&gt;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포함 방식에 관한 전문가 의견(예시)

구분	긍정	부정
제2조 1호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검·인정 교과서는 법률상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교육용으로 엄격하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임.</li> <li>- 교육용 콘텐츠는 '교사용과 학생용'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예컨대, 특정 프로그램 등) 교과서와 지도서와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함.</li> <li>- "교육용 콘텐츠"는 최소한 교과용도서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용 콘텐츠는 서책형 교과서나 지도서와는 차이가 많음.</li> <li>- 교육용 콘텐츠 그 자체를 교과용도서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li> <li>- 자료의 성격이 다른 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li> <li>- 교육용 콘텐츠는 서책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와 매체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지도서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li> </ul>
제2조 2호나 3호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교육 매체 중 한 부분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li> <li>- 제2조 2항이나 3항에 포함된 형태와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교육용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향후 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저작물과 차별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li> <li>-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통칭하여 교육용 콘텐츠라고 봐야 할 텐데, 동일한 수준으로 나열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짐.</li> <li>- "교육용 콘텐츠"에 관한 별도 항 신설하여 명시</li> </ul>

(2차 델파이 전문가 서술 의견 중)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탐색하기에 앞서 법령 및 제도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입각하여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와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먼저 「저작권법」의 규정 개선과 관련하여 제25조 ②항에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학교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수업을 제외하

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업 연구 및 교과 연구 등과 같은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학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회, 전시회, 교내방송 등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 활동이다. 연구 결과, 현행 법령이 수업 및 수업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학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25조 ②항의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이외에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같이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학교교육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에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와 지도서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경우 서책 교과서와 동일성을 유지한 교육용 콘텐츠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에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하고, 교육용 콘텐츠의 정의를 다른 별도의 각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유통·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저작권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규에 실제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앞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 확대’ 및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 「저작권법」 제25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배타적 권리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25조 ②항과 ③항의 ‘수업’ 및 ‘수업 또는 지원’이란 문구를 ‘학교교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이 지칭하는 범위를 ④항에서 “제③항의 학교교육에는 수업 및 학교에서 실시되는 수업 외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의 장학활동 등을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령이 변경된다면 현재보다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유통·활용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용 콘텐츠가 학교교육에서 주 교재의 하나로 활발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용 콘텐츠는 일반 교육용 콘텐츠가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친 교육용 콘텐츠라는 점에서 일반 교육용 콘텐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서는 이를 ‘학교교육용 콘텐츠’라고 명명하여 일반 교육용 콘텐츠와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교과용도서’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 1호에 ‘학교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4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와 같이 ‘학교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형태이다. ‘학교교육용 콘텐츠’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 것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5815호, 2018. 10. 16.] 제2조(정의) ③항에서 콘텐츠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콘텐츠’란 개념을 법령에서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4호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2호와 3호에 제시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행 법령을 최대한 준수하는 관점에서 구안된 것이다. 이는 서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여전히 학교교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와 ‘학교교육용 콘텐츠’가 혼용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먼 미래에 ‘학교교육용 콘텐츠’가 서책 형태의 교과용도서의 비중을 뛰어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된다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학교교육용 콘텐츠’ 관련 내용을 분리시킨 별도의 ‘학교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거나, 아예 「(가칭)학교교육용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령 체계를 구상할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구재균. (2007).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 문제 연구. **정보화정책** 14(1). 144-160.
- 김기태. (2013).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9(1). 27-47.
- 김창화·김원오·이가영. (2018). 교과용도서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홍래. (2011). 교육정보 저작권 현안과 개선 방안. **정보창의교육논문지** 5(1). 고려대학교 정보창의교육연구소. 15-23.
- 변용완, 김홍래, 문무상, 이성언, 김훈주, 황은기. (2015). 학교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2015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신상민. (2014).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20(3). 3-40.
- 정영식, 이광현, 정미영, 이은환, 정수인, 서정희. (2016a).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용도서 배포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CR 2016-9.
- 조용기, 김덕근, 박주현, 윤지훈, 안종욱, 이지수, 김진아, 남창우. (2019). 미래 사회 대비 교과용도서 편찬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특성 및 활용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T 2019-1.
- 최진원. (2010).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14(1). 1-31.
- 최진원. (2012). 디지털 시대의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법** 6(1). 151-174.
- 최진원, 손한기, 이일호, 이종민. (2018). 교과용도서 저작권 운영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18-01.
- 헌법재판소 1992.11.12., 89헌마88(인용 판례).
- Alberta Education. (2010). *Guidelines for Evaluating Learning Resources for and about Aboriginal People*. Alberta: Canada.
- Allen Consulting Group Report. (2009). *Review of School Based Management in the ACT.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berra.
- Birkland, T. A. (2001).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M. E. Sharpe, Inc.
- Cole, M. (2010). What's Culture Got to Do with It? Educational research as a Necessarily Interdisciplinary Enterprise. *Educational Researcher*. Vol.39, No.6, pp. 61-470.
- Government of Alberta. (2011). *Policy and Requirements for School Board Planning and Results Reporting*.

## ABSTRACT

### Exploring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fre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

**Kim, Deok-Geun**(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Because of its specialty and public nature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Korea, the Copyright Act provides specific provisions that restrict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holders. Such exclusive rights are applied to the situation that particular content is us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at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even when it is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it is restricted only to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specifically, actual classroom activities. It means that it will not be available to use educational content in a legal sense, in case that relevant activities, even though they are intended to improve teaching methods and the quality of learning, are considered not directly related to classroom activities. As long as educational content is produced by others, moreover, it is restricted in use of such content even in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se institutions play a role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ased on these issues, we investigated how laws and policies could be changed, or improved, in order to create more convenient environments where educational content is freely developed, utilized, and distributed. Above all, we looked for the ways in which the Copyright Act will be improved—especially, how the scope of exclusive rights, which is limited to ‘actual classroom activities and its supports,’ will be expanded. Next, we argued that the scope of copyrights has to go beyond educational activities and its supports at schools, and it needs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which would help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 Finally, we suggested that, in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considered the same level as curriculum books.

**[Key words]** Educational content, Curriculum books, Textbook, Educational copyright